

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8. 4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지원등 교육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명을 “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”로 함
- 보조사업의 범위 구체화(안 제2조)
 -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 -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 -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
- 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 확대 (안 제3조제1항)
 -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20 →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”를 “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11조 제6항”을 “제11조제6항”으로 하고, “시·군 및 자치구”를 “지방자치단체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“운영사업”을 “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”으로 한다.

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

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

제3조제1항 중 “매회계년도 마다”를 “회계연도마다”로 하고, “1000분의 20”을 “10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내용을”을 “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 제2항”을 “제5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 제6항 및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(이하 “각급학교”라 한다)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11조제6항----- 지방자치단체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• 제명 띄어쓰기 • 상위법 적용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<신설> 3.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	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.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.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	• 상위법 적용
제3조(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)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(세외수입제외) 수입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	제3조(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) ① - -----회계연도마다----- ----- 1000분의 30----- -----	• 보조금 기준액 범위확대
제5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	제5조(보조금의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----- -----	• 상위법 적용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6조(목적외의 사용금지) ①자급학교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	제6조(목적외의 사용금지) ① --- ---제5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	• 정비 기준 적용